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 및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고,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2029년 6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9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외한국문화원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문화거점지원팀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외뉴스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방송영상 육성을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

까지로 연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정원 1명(5급 1명)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7항 중 “저작권보호과·국제문화정책과·한류지원협력과 및 국제문화사업과를”을 “저작권보호과·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국제문화정책과·한류지원협력과·국제문화사업과 및 해외문화거점지원팀을”로, “문화기술과장 및 문화수출통상과장은”을 “문화기술과장·문화수출통상과장 및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를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해외문화거점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제8조의2제1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를 각각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3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저작권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저작권침해범죄에 관한 수사
3. 저작권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저작권침해범죄 사건 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
5.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6. 저작권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7. 저작권침해범죄 분석 및 증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불법 복제물 단속에 관한 사항
9.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0. 수사 기록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저작권침해범죄 수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21항(중전의 제20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④ 해외문화거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문화 분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신설 및 코리아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충
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의 계획·시행

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제46조제1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8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을 “7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으로 한다.

제5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저작권침해범죄 수사 및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6월 29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754”를 “755”로 하고, 일반직 계 “747”을 “74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을 “1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6”을 “17”로 하며,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12”를 “214”로,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89”를 “186”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을 “2”로 하고,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2”로 한다.

별표 14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특별사 법경찰과	1명 (4급 1명)	2029년 3월 31일까지
----------------------------	---------------	----------------

별표 17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0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9년 6월 29일)

총계	7
일반직 계	7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3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을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으로, “2026년 6월 30일”을 “2026년 11월 30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2026년
7월 1일”을 “2028년 7월 1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2026년
7월 1일”을 “2028년 7월 1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31일”로,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2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외문화거점지원팀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외문화거점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외문화거점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문화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명), 별표7의2 정원 1명(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3명), 별표7의2 정원 1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 ⑱ (생략)

⑲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 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생략)

6.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 11. (생략)

<신설>

-----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해외문화거점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 ⑱ (현행과 같음)

⑲ -----
-----.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4.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 11. (현행과 같음)

1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⑳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한 법률」 제6조제23호에 규
정된 범죄(이하 “저작권침해
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
의 수립·시행
2. 저작권침해범죄에 관한 수사
3. 저작권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저작권침해범죄 사건 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
5.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리 관련 제도의 운영
6. 저작권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7. 저작권침해범죄 분석 및 증
거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불법 복제물 단속에 관한 사
항
9.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
에 관한 사항
10. 수사 기록 관리 및 시스템

⑳ ~ ㉒ (생략)

㉑ 국제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종전의 제20항)

1. ~ 11. (생략)

12.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신설 및 확충

1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의 계획·시행

1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1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저작권침해범죄 수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㉑ ~ ㉓ (현행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와 같음)

㉑ -----
-----.

1. ~ 1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㉔ 해외문화거점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문화 분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신설 및 코리아센터 건립 등 인

	<u>프라 확충</u> <u>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의 계획·시행</u> <u>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u> <u>5.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u>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8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정 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7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한시정원) ① ~ ⑤ (생략)	제50조(한시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저작권침해범죄 수사 및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6월 29일까지 별표 17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11월 30일----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은 각각 202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 제>

② -----

----- 2027년 6월 30일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

----- 2028

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제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 본다.	년 6월 30일----- 2028년 7월 1일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 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u>방송통신사무관</u> 또는 <u>학예연구관</u> 2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 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 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임업주사·<u>방송통신주사</u> 또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u>방송통신사무관·학예 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u> --)- 2028년 6월 30일----- 2028년 7월 1일 -----

는 학예연구사 2명)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8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
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 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
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
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
연구사 1명)으로 본다.

-- 방송통신주사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8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방송통신사무관 · 학예
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

----- 2029년 1월 31일 -----

----- 2029년 2월 1일 ---

--방송통신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해외뉴스분석팀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 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8년 12월 31일</u> -----.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54</u>	<u>755</u>	+1
·	·	·	
·	·	·	
일반직 계	<u>747</u>	<u>748</u>	+1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6</u>	<u>17</u>	+1
·	·	·	
·	·	·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6</u>	<u>17</u>	+1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학예 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u>212</u>	<u>214</u>	+2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 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u>189</u>	<u>186</u>	-3
·	·	·	
·	·	·	
·	·	·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			•	•		
	•			•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1</u>		<u>2</u>	+1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u>3</u>		<u>2</u>	-1	
	•			•	•		
	•			•	•		